

미 대선 후보들의 노동정책 및 고용정책 비교

Jennifer Clark (미국 조지아공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 개요 : 노동정책으로 조울되었다기보다는 다양한 정책분야에 산재함

2008년 미 대통령 선거의 초점은 외교정책에서 최근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 금융시장, 주택시장,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경제정책으로 옮겨갔다.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경우 노동정책은 선거운동의 쟁점이나 정치토론의 전면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사실 이번 대선의 후보로 나선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민주당, 일리노이주)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 애리조나 주)의 정책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계, 노동 및 노사관계 전문가가 흔히 ‘노동정책’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유사한 제목을 달고 있는 다양한 정책 분야와 입법안을 탐구해 보아야 한다. 양 후보 모두 선거운동용 웹사이트에 노동정책이나 고용정책을 주요 쟁점 분야로 올려놓지 않았다. 다만, 노동과 고용정책에 관한 개인적 정책 성향이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동안 견지해 온 입장차를 반영하는 특정 고용정책이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 2008년 11월 5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위원이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조금 늦게 실려서 아쉽지만 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이 글이 앞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정책 및 고용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정책에 대해 양 대선 후보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적 안정과 고용관계 규제에 대해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노조 결성, 단체교섭, 일자리 보호를 통한 소득보장, 최저임금, 작업장 수준의 의료 및 퇴직 관련 혜택, (인종, 성별, 최근 들어서는 성지향성, 이민 신분과 관련하여) 채용, 승진, 보상, 해고의 차별적 관행의 규제 및 금지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지원을 하는 등, 노동자 친화적 의제를 옹호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규제중심적 접근법을 피하고, 고용관계에서 ‘자유방임’적 접근법을 중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이 강압적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노동자 개인이 고용주와 개별 고용계약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보험이나 퇴직관련 제도 등) 작업장 수준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유연성을 부여하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즉 노동자에게 건강이나 퇴직관련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은 미국 기업이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차별의 문제를 보다 제한적으로 접근하여 정책은 개별적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두 대선 후보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은 이들 후보가 속한 정당의 대립하는 이념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 후보가 특정 정책에 대해 견지하는 입장은 포괄적인 노동정책에 관한 입장에서서보다는 다수의 직무관련 정책 표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육아보조금지급, 육아/간호휴가를 신청한 가장의 일자리 보장과 소득지원, 직장내 차별 금지, 탄력근무제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의 경우 오바마 후보의 입장은 정책자료집 중 ‘직장·가족 양립’이라는 표제 아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매케인 후보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정책 분야인 여성과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보호는 ‘경제 변화 속 직장내 유연성’과 ‘직장내 유연성과 선택’이라는 두 가지의 표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 어느 후보도 이들 정책을 ‘노동정책’으로 부각시켜 분류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노동정책, 고용관련 규제, 노동자를 위한 경제적 안정 등에 관한 정책 이슈에 대해

두 후보의 입장과 선거운동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미 의회에 상정·심의 중인 입법안과 관련하여 미 노동 및 고용정책 중 차기 정부에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이들 정책에 대해 오바마 후보와 매케인 후보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요 입법안에는 ① 계약조건과 규정 또는 고용, ② 직장의 임금 및 혜택 등 미국 노동정책의 핵심이라고 간주되는 분야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1993년도 가족의료휴가법(FMLA) 확대 적용과 심의 중인 근로자자유선택법(EFCA) 등 두 가지가 있다. 이외에도 심의 중인 입법안이 몇 개 더 있다. 이들 법안은 부시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사법부의 반노동적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둘째, 본고에서는 심의 중인 입법안 외에도 연금보장(retirement security), 연금, 사회보장 등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정책 이니셔티브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차별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심의 중인 입법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 기존 법률 개정 제안 : 근로자자유선택법(EFCA) 및 가족의료휴가법(FMLA)

미 노동 및 고용정책에서 차기 정부 중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안에는 ① 근로자자유선택법(Employee Free Choice Act : EFC), ②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FMLA)이 있다. 노조조직 및 단체교섭에 관해서는 오바마 상원의원은 근로자자유선택법을 옹호하는 반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기존 노동법을 검토하고 ‘현대화’할 대통령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양 후보가 모두 기존의 가족의료휴가법(1993)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오바마 상원의원은 가족의료휴가법의 범위와 보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반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가족친화적 직장법(Family Friendly Workplace Act)이라는 대안적 정책들을 지지한다.

근로자자유선택법(EFCA)

근로자자유선택법(EFCA, HR 800/S 1041)은 2007년 봄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2007년 여름 미 상원에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노동법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하고 신경제 하에서 노동자의 노조 조직력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1935년 제정된 미국 노사관계법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노조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근로자자유선택법은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평생고용 개념이 급속도로 쇠퇴하는 추세를 인식하여 패러다임을 변경하고자 한다. 주요 목적은 다수 노동자 대표체(unit)를 결성한 후 사용자와 노조대표 간의 교섭이 시작되는 시기와 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다. 사용자는 기존에 최소 30% 이상의 노조결성 선거참여 동의서(card drive) 확보한 후 미국 노사관계위원회가 감독하는 선거를 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반수의 노조결성 선거참여 동의서가 있을 경우 최초 교섭을 개시해야 한다.

노조 결성을 위한 법적 절차를 변경할 경우 노조 결성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보복하는 시간과 노조 반대 캠페인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다. 또한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괴롭히거나 해고)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자유선택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미국의 최초 교섭제도는 캐나다의 현 제도와 유사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파업근로자를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금지되며 (미국 노사관계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에서 파견하는) 노동임명관이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부당처우 없는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국 노사관계위원회의 근로자 권리 옹호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천명하였다. 오바마 상원의원과 바이든 상원의원은 근로자자유선택법안을 옹호하고 있으며 오바마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이기도 하다. 2007년 6월 오바마 상원의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1) 오바마 상원의원은 2007년 6월 20일 근로자자유선택법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http://obama.senate.gov/press/070620-obama_calls_for_6/

“현재의 직장 노조결성 과정은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노조결성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근로자자유선택법안에서는 노동자가 과반수의 서명과 카드 체크를 통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강화된다. 노조결성은 노동자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즉 노동자의 자유선택 사항이 되어야 한다.”¹⁾

매케인 상원의원과 페일린 주지사는 기업연금의 이동성과 현 노동법의 현대화를 강조함으로써 작업장 유연성을 증대할 것을 제안한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2007년 6월 근로자자유선택법안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른바 2007년도 근로자자유선택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 법안명 자체가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근면한 미국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근로자에 대한 기만이다.”²⁾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에 대응하여 2007년 비밀투표보호법(Secret Ballot Protection Act)을 공동 발의하였다. 그는 근로자자유선택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노조에 반대하는 노동자가 노조 조직세력이나 친노조 성향의 동료에게 부당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7년 미 상원에 상정된 관련 법안 중에는 숙련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건설노동자의 재강화법(RESPPECT)이 있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직업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 때문에 ‘감독관’의 정의를 수정하고, 이들을 교섭단위에서 제외시킨 미국 노사관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간호감독관의 노조 결성권을 부인한 오크우드 헬스케어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오바마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미 상원에서 발표, 2007년 6월 26일, 의회 속기록.

가족의료휴가법(FMLA)

오바마 상원의원은 노동자의 노조 결성을 위한 보호장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노동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주로 세제혜택을 통하지만 동시에 직접규제를 통해서) 기업이 근무환경/조건의 유연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또한 근로가정에게 다양한 소득지원을 확대하는 연방정책도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의료휴가법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오바마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직장이 가족을 위해 ‘일’하게 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정책 의제를 내놓았다. 이러한 정책 의제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저 가족의료휴가법 적용대상을 기존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들어 있다. 또한 단순히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가 되도록 주 차원의 장려책을 기획 중이다(현재 일부 주에서 주법으로 되어 있다).

오바마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족의료휴가법의 확대 적용뿐 아니라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하고,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직장내 가족간호 제공자에 대한 기업의 차별적 관행을 규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상원의원은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확대하도록 사용자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매케인 상원의원의 노동 및 고용정책의 핵심은 ‘탄력근무제 확대’이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을 지지했으며, 또 다른 법안인 ‘가족친화적 일터’ 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매케인 선거운동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다음의 내용을 옹호한다.

“가족친화적 일터법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보다는 대신 휴가를 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특정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다음 주에는 그에 상응하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제안하는 것이 용이하게 한다.”³⁾

3) 존 매케인 선거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johnmccain.com/Infoming/Issues/>

매케인 상원의원이 직장과의 균형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가족의료휴가법의 확대 적용을 옹호한다고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매케인 선거운동본부에서는 미국 작업장 유연성 및 선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노동법의 '현대화'와 매케인 선거운동본부에서 세계경제 경쟁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작업장 유연성(잡은 전직, 연금 등 혜택의 이동성, 새로운 근무형태 등)을 수용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원격근무, 재택근무, 재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표명했으며 현재의 노동법이 이러한 잠재적인 고용성장 및 기회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소득보장 : 임금과 혜택

임금과 소득

뒤에서 다루는 '직장내 차별'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금차별과 고용평등정책 외에도 오바마 상원의원과 매케인 상원의원은 임금과 소득에 관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연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현재의 국회법안에 의한 방식에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시킬 것을 주장한다. 또한 연방소득세법을 통해 운영되는 근로빈민층을 위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25년이 넘는 의원 재직기간 동안 연방최저임금제에 대한 투표에서 수차례 찬성과 반대를 번복하였다. 이렇다 보니 매케인 상원의원이 연방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상승률이나 (사회보장제도와 유사하게) 생계비 조정에 연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는 근로소득지원세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혜택 : 연금, 보험, 사회보장

현 경제환경에서 정부나 사용자가 기초가 되는 퇴직금 제도 및 연금 관련 정책은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금과 퇴직 이슈를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공공 퇴직 제도와 민간이 운영하는 퇴직 제도 간의 차이점이고, 둘째는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제도 간의 차이점이다.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노동자를 위해 사용자가 제공해 온 퇴직급여 제도는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서서히 변화하였다. 확정기여형(일반적으로 401k 제도라고 지칭)에서는 투자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따라 운용 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와 사용자(사용자의 대응각출금을 match라 함)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의 연금 제도이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되며, 투자 결정시 근로자의 재량이 일정 부분 허용된다. 퇴직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좌의 잔액이 바로 퇴직자의 연금이 된다. 미국 인구의 연령 분포나 확정기여형 퇴직 제도가 폭넓게 채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퇴직자금의 미래나 ‘민간’의 확정기여형 퇴직 제도 등에 대한 미국 노동자의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즉 사회보장)을 하이브리드 형태인 공공·민간의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하자는 정책 토론은 최근 들어 수그러졌다. 이전 대선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퇴직급여에 관한 정책 토론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각출금에 세제 특례를 제공해야 하는지의 내용이 다루어졌고, 사용자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확정급여형 퇴직 제도 하에 있었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를 정부가 어느 선까지 검토하고 강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 출신 의원 대다수가 그렇듯이 사회보장제도(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퇴직계좌(개인연금제도)를 옹호하였다. 정책 분석가들은 이러한 전략이 사회보장

4) 존 매케인 선거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johnmccain.com/Infoming/Issues/>

제도를 기존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정부가 출연하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매케인 상원의원의 웹사이트는 매케인 후보가 “노동자가 자신의 니즈에 가장 잘 부합하는 퇴직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⁴⁾ 미국 퇴직연금제도 중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사용자에게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보다 유동적인 서비스경제의 고용모델보다는 장기적인 고용관계가 기본인 산업경제 모델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연금제도의 경우 연금수급권 확정기간(vesting period, 사용자에게 따라 보통 3~10년) 때문에 이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연금 혜택의 이동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확정기여형 모델이 힘을 얻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두 후보가 세계 금융위기 발발로 인해 미 노동자의 퇴직금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연금 혜택 외에 미국 고용제도에서 사용자가 기초가 되는 혜택은 기업 의료보험이다. 오바마 상원의원과 매케인 상원의원은 현 의료보험제도를 상당폭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사용자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각기 다르지만, 고용에 기초한 혜택인 현재 의료보험의 틀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양 후보는 각자가 제안한 계획에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의 규모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계획이 현재의 고용에 기초한 의료보험 모델을 강화하기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직장내 차별

오바마 상원의원과 매케인 상원의원은 직장내 차별에 대한 규제, 채용/해고/보상/승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흔히 민권법으로 분류하는 고용차별법과 관련하여 미 국회에서는 몇 개의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일반적으로 양 후보는 직장내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차별을 규제하고

중재하는 데 있어 연방정부나 법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미 의회에 상정된 법안 중 2008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화, 부결, 거부 등으로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 주요 법안이 세 가지 정도 있다. 이들 3개 법안은 모두 부시 행정부 재임 8년 동안 고용차별 소송에 대해 내려진 행정 및 사법 판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법안은 고용차별금지법(HR3685)으로 성 지향성을 토대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64년도 민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양 후보가 해당 법안에 대해 아직 찬반 중 어느 쪽에도 표를 던지지는 않았으나 양 후보의 입장은 다시금 대립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오바마 상원의원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바마 상원의원은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성 표현 등을 토대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근로자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직장내 차별금지 규정에 성 지향성을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가치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레드베터 공정임금법(S1843/HR 2831)은 레드베터 대 굿이어 사건의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성차별과 임금차별 건에 대해 보상지급표를 마련하였다. 해당 법안에서는 전술한 차별적 관행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 임금의 첫 사례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급여를 개별적인 임금차별 행위로 파악한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지금도 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굿이어(Goodyear)사를 상대로 임금차별 소송을 낸 릴리 레드베터는 오바마 상원의원을 지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용 광고에도 출연하였다. 매케인 상원의원의 경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레드베터공정임금법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먹고 사는 법정 변호사의 주머니만을 불러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급여형평법(S766/HR1338)은 임금지급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구제책을 수정하기 위해 ① 보복금지 규정을 추가, ② 처벌 강화, ③ 노동부 장관이 추가적으로 보상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등 동일임금법으로 알려진 1938년도 공정노동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⁵⁾ 오바마 상원의원은 기존의 고용차별 규정을 강화할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결론

2008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고용 및 노동정책은 정책 토론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양 후보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미 대통령 후보가 노동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적은 거의 없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노조 결성, 단체교섭권,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소득보장 및 고용안정에 대한 권리 등의 확보와 관련하여 연방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정책 입장은 크게 대비된다. 최근 금융위기를 고려한다면 차기 대통령이 향후 4년간 고용정책에 대해 분명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상원의원과 매케인 상원의원 중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KLI**

5) 의회도서관, H.R.1338의 요약 설명.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10:HR01338:@@D&summ2=m&>